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121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오화석, 심환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9.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9,666,2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666,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경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을 2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20. 4. 3.로 정한 보증약정을 하고, 기보보증서를 발행하였고, C은행은 위 기보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B은 2019. 6. 3.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C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9. 9. 5.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153,827,9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20. 5. 21.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 채무액은 165,643,193원 상당이다.

라. B은 2019.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82,88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는 가까운 친인척인데, B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매매)하였으므로,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29,666,2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피고와 B이 형수와 시동생 사이인 점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시가에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9. 3. 15. 기준으로 시가가 306,8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위 매매가액 282,880,000원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2) 피고와 피고의 남편 E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다른 토지(부산 강서구 F 답 2803㎡)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E는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E는 위 매매대금 전액 (282,880,000원)을 마련하여 이를 실제로 B에게 지급하였다.

(3) B와 피고의 남편 E가 형제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 사이이고, B은 피고 및 E의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피고가 B의 개인적인 금전관계나 재산상태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부산 강서구 G 답 1461㎡ 끝.

